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급 지급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 신설(안 제23조제5항 신설)

소급 지급 급여액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3. 00.~2024. 04. 00.)

대통령령 제 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급여의 환수”를 “급여의 환수 등”으로 한다.

제2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u>급여의 환수</u>)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3조(<u>급여의 환수 등</u>)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u> <u>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u> <u>이자</u> 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u>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u> <u>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u> <u>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u> <u>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u> <u>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u> <u>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u> <u>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소</u> <u>급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u> <u>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1